

	국제교류문화원규정	규정번호	3-7-4
		제정일자	2011.09.01.
		개정일자	2020.06.01.
		개정차수	5차
		소관부서	국제교류문화원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안산대학교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 국제교류문화원(이하 “문화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기능 및 조직

제2조(기능) 문화원은 다음의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국제교류 관련 프로그램
2. 외국인 유학생(한국어연수) 및 다문화 프로그램
3. 해외연수 프로그램(해외어학연수, 해외인턴십, 글로벌 현장학습 등)
4. 해외취업 연수 프로그램
5. 외국어교육 프로그램
6. 기타 국제교류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

제3조(조직) ① 문화원 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총장의 명을 받아 문화원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. 부원장은 각 프로그램을 위임받아 운영한다.

② 문화원에는 필요한 경우에 각 프로그램 업무와 운영을 위해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, 연구과제에 대한 진행과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.

③ 책임 연구원 및 연구원의 임용은 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문화원은 행정 업무에 필요한 팀장과 팀원을 둘 수 있다.

제3장 운영위원회

제4조(설치 및 구성) ① 문화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, 각 프로그램 별로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며,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5조(위원장 및 직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임기)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,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, 비치하도록 한다.

제8조(위원회의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문화원 운영·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
2. 문화원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3. 문화원 사업계획 및 예산·결산에 관한 사항
4. 외국인 유학생(한국어연수) 및 다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5.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
6. 해외취업에 관한 사항
7. 기타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

제4장 재 정

제9조(재정) ① 문화원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예산으로 총당한다.

1. 대학회계 자원
 2. 그 밖의 지원금 및 수입금
- ② 문화원의 회계연도는 대학의 회계연도를 적용한다.

제5장 보 칙

제10조(세부사항)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 년 2 월 28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 년 8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.